

<변경리스트>

No.	펀드코드	펀드명	변경 사항	시행 예정일
1	004190	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)	종류 S 수익증권 추가	2014.03.18.화
2	004200	신한BNPP더드림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(종류)	1. 종류 S 수익증권 추가	
3	108D90	신한BNPP봉쥬르그레이트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2. 현금성 자산 투자한도 문구 정정*	
4	108D30	신한BNPP봉쥬르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5	108D00	신한BNPP봉쥬르동유럽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6	108E00	신한BNPP봉쥬르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7	108E10	신한BNPP봉쥬르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8	108D50	신한BNPP봉쥬르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9	108D70	신한BNPP봉쥬르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10	108D20	신한BNPP봉쥬르중남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11	250080	신한BNPP봉쥬르차이나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12	108D80	신한BNPP봉쥬르친디한증권자투자신탁(H)[주식](종류)		
13	250720	신한BNPP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(종류)		

* 현금성 자산 투자한도 문구 정정(집합투자계약 기준)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 18조</p> <p>3.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의 비중 조절시 설정 및 환매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</p>	<p>제 18조</p> <p>3.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